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채현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333

발의연월일: 2025. 1. 8.

발 의 자:채현일·박상혁·복기왕

서삼석 · 이해식 · 강득구

모경종 • 양부남 • 김성환

김원이 · 조인철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 2024년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.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지 않았고,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현장 조치에 그치고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자료의 멸실, 은폐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

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함

으로써,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(안 제27조의3). 법률 제 호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3제1항 본문 중 "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"를 "지체없이 기록물의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의3(기록물의 폐기 금지)	제27조의3(기록물의 폐기 금지)
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	①
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	
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	
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	
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	
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	<u>지</u>
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	체없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
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	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
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	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
다만,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	야 한다
의 소관 기록물에 대해서는 미	
리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	
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